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경제기업 정의 및 제품 구매 의무화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9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장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4
나. 총괄의견	6
2. 주요 조문별 검토	13
가. 제1장 총칙	13
나.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
다.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	28
라. 제4장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34
마. 제5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등	41

I. 제안경위

2025년 9월 25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5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특히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외에서는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실천과 정부·시민 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과 경쟁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성장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등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전용판매장 및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그 밖에 민간기업 및 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차.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확대와 판로확충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7장과 3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안 제1조~제4조)은 총칙 규정으로 이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를 두고 있고, 제2장(안 제5조~제11조)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안 제12조~제18조)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안 제19조~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두고 있음. 제5장(안 제24조~제31조)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장(안 제32조~제34조) 및 제7장(안 제35조~제37조)는 각각 보칙 및 벌칙을 두고 있음.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의 구성 체계

주요 내용		해당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구매촉진)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도별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13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4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15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7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8조(과징금)
제4장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20조(수의계약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21조(행정기관 소관사무 민간위탁 시 우선 기회 제공) 제2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제23조(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5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등	제24조(판로지원사업) 제25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2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 제2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재정지원 등) 제30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 제3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등)
제6장	보 칙	제32조(포상 및 평가 등)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 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공공기관의 기존 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나. 총괄의견

“사회적경제”는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¹⁾²⁾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정부 정책자료로서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개념을 정의한 바 있음.

사회적경제는 시민적 가치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민주적 참여와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고,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국가와 시장에서 미충족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것 등을

1) OECD, Social Enterprises, (1999), 1~72쪽,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2001). OECD,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Paris: OECD, (2003)

- 김종호,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제47집, 2014. 8.에서 재인용

2) 유사한 맥락에서 ①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를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②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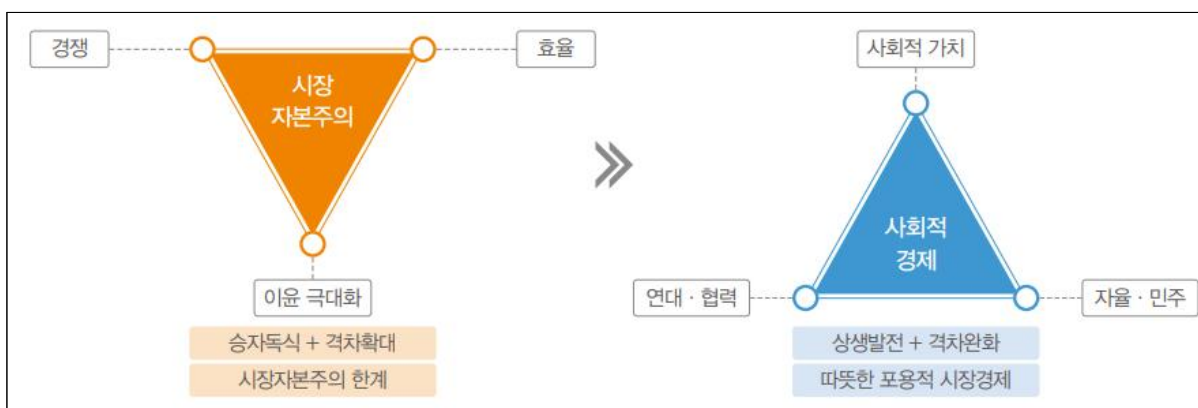
특징으로 하고 있음.

[표] 사회적 경제의 특징

조직운영	경제활동	추구가치
-회원간 평등과 자율경경 -1인1표 민주주의 -재투자된 초과이윤에 대한 지속적인 집합적 소유권 인정 -조직재산 집단소유 등	-지역중심 경제활동 -시장에서 미충족된 재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적보호(노숙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 사회적목표 > 상업적 목표 - 경제 재분배 초점 - 시민적 가치(자발성) 추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로는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사회적 경제와 시장자본주의의 비교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주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³⁾

[표]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안전부 지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2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시작 연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 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수 ('24년말)	3,762개	26,293개	1,726개	962개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은 '24년부터 폐지)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6개 지역자활센터 250개
지원내용	· (경영) 성장지원 센터 운영,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컨설팅 · (세제) 법인·소 득·지방세 감면 등	· (경영) 설립·운영 자문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공공 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재정) 사업비 ·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 (재정) 한시적 인 건비 ·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3)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 중 사회적경제의 실현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사업시행 근거 법률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을 들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등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가 포용적인 시장경제의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발전단계에 있고 양극화 해소 등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특히 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적경제기업보다 보다 강화된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제정안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제정안과 다른 법률에서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보면 대표적인 조직형태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주무부처가 다르고 중간지원기관도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저해되고 있음. 그 결과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각 사업 간 연계성이 کم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관리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이 제각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행정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임⁴⁾.

이에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원정책 수행에 있어 총괄조직을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며, 제정안의 내용 중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②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의 사항은 유사한 내용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일부 내용이 동일한 점이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는 그 타당성이 있지만, 경쟁 제한적인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① 장애인·여성기업 등 다른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②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법체계 기반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2026년 3월 현재 1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8건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발의·심사 중으로, 각 제정법안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어의 차이(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

4)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 중 사회적경제의 실현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사업시행 근거 법률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사회적 책임 장려),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을 들 수 있음.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연대경제조직 등)나 각 개념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시 상기 법안의 심사과정을 참고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안 발의 현황

제명	대표발의	발의일	의안번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황명선의원	2024.07.11.	22016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영배의원	2025.11.14.	2214251
	김성희의원	2025.11.13.	2214238
	위성곤의원	2025.11.07.	2214034
	정태호의원	2025.09.05.	2212727
	김동아·최혁진의원	2025.08.28.	2212479
	복기왕의원	2025.08.27.	2212422
	윤호중의원	2025.02.27.	2208562
	용혜인의원	2024.11.04.	2205197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제정안의 지원내용 중 ①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의무구매제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는 일률적인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설정은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공공기관 부담 가중 우려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②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의 특례확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주요제도

지원제도	세부 내용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직접생산의 확인 및 취소 등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제한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우선구매 의무 및 수의계약 (안 제19조·제20조)	○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판로지원 및 전용판매장 설치 등 (안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1조)	○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
재정지원 등 (안 제29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안 제30조)	○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함

1.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

1)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공공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 및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확산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를 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제정안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등의 정의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는 일의적으로 확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치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이 법률 해석에 있어 일관된 해석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가치’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바,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법안의 정의 규정에서 다루는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사회적가치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개 념	법 안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황명선의원안)
사회 연대 경제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의원안)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성희의원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영배의원안)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황명선의원안)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신장 나. 시민 또는 구성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 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등 사회통합 증진 마.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노동권 보장 사. 자원 재활용과 환경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사회 공익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용혜인의원안)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영배의원안)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및 공공기관등을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사회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관계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2.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 이주민, 출소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계층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전체 유급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만,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 현재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등과 관련해서 그 일관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의 ‘사회적경제기업’ 정의는 다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정의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함.

가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되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안)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는 크게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제정안은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각각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여 그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양 제정안은 각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모두 포함할 뿐 아

나라 예비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위단체(연합회 및 전국 연합회), 농어업법인, 금융협동조합, 문화사업자 등 제정안이 열거하고 있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정의 비교

제 정 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 서비스 공급,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사회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관계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1항제2호다목(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 너.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사회적경제기업’은 각종 지원 및 통합적인 기본계획·지원체계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지원제도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제도나 재정지원, 국·공유재산 특례 등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도 규정⁵⁾하고 있는바, 양 제정안에서 서로 달리 정할 경우 일관된 정책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제정안의 “공공기관등”으로 정의된 각 기관의 범위는 유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2조제2호 조문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5)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한편,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⁶⁾과는 달리 영리성이 강함에도 이를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지원하는 것은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영리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19조제4항에서 일반 사회적경제기업과 달리 수의 계약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는 등 우대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정의 규정 외 다른 조문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 그 인가절차나 구체적인 인증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개정(2026. 8. 15 시행)한 바, 법률 심사 및 시행시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생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나.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정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 단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② 시·도지사가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③ 공공기관등의 장이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

제정안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보급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도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도별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시·도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조달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노동, 환경, 복지, 경영,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의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국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협의체 등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위한 시행지침(이하 “구매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달사업의 목적과 산업, 지역 및 공공기관등의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제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의 집계, 공표·제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매시행지침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구매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구매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및 제도개선 실적(이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제출한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 구매시행계획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및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기관이 1년 단위의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조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근거법률 중에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⁷⁾가 있으므로 개별법상 기본계획과 제정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일치시키는 등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경기도는 제정안 제10조에서 공공기관 등이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연도의 지자체 본예산은 통상 연말에야 확정되므로 예산 확정 직후 즉시 계획을 수립하기에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바, 예산액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예산 확정 후 일정 기간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⁸⁾는 공공기관의 장(지자체 포함)이 매 회계연도의 시작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문정비 측면에서 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제1호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조달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노동, 환경, 복지, 경영,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의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국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협의체 등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재 발의되어 심사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국가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영역에 비추어 업무 중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⁹⁾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⁰⁾에서는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는바,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등과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방안 마련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

1)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②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회적 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

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와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입찰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판로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¹¹⁾, 양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고 있음.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중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 제정안 및 판로지원법 비교

구 분	제 정 안	판로지원법
경쟁제품 지정요건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지정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 시 공공기관의 계약체결 방법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 타	직접생산의 확인·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절차에 대하여 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대동소이하게 규정	

따라서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두 법률이 각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토록 의무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품목의 지정과 의무이행의 확인 등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특정 하나의 제품이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각각 지정되는 경우 의무를 부여받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의 범위, 계약방식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조달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처간 조율 및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직접생산 확인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확인기준, 확인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

제정안
제15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하는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제15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고 있음¹²⁾.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생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이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동일한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법 적용에서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을 의무화할 경우 수의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요하지 않는 현재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³⁾.

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 13) 현재 국가계약법령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수의계약 시 별도의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라. 제4장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구매토록 하고, 수의계약 구매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 규정함.

제정안
제19조(공공기관등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기관등 별로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공공기관등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은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수의계약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적 고용창출 실적

2. 창출한 고용의 질
3. 노동통합 기여도
4.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실적
5. 환경에 대한 영향
6.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향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정안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항), 이들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제3항, 제4항), 경쟁의 제한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수의계약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계약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바,¹⁴⁾ 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참여자가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등 자생력이 취약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이 아닌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한경쟁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음¹⁵⁾.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초기단계로써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판로를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경쟁의 제한을 통한 판로지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을 떨어뜨려 오히려 사업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존립 가능성을 저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에 배치될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바,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판로지원법」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자(중

-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소기업협동조합 포함)에 대하여만 공공구매 우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¹⁶⁾.

반면, 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대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기업을 우대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데(대기업이 조합에 참여하는 경우 등), 이 경우 공공기관은 대규모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대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이 역차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녹색 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제품, 녹색제품을 제외한 경우 우선구매비율을 법률로 정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하고 있음.

[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현황

구분	중소기업 제품(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녹색 제품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13, 시행령 \$4, \$1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9 및 시행령 \$7)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9의2, 시행령 \$7의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 시행령 \$10)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 업재활법 (\$22의3, 시행령 \$21의5)	협동조합 기본법 (\$95의2, 시행령 \$26)	사회적기업 육성법 (\$12, 시행령\$12 의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시행령 \$11)
구매 비율	총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중소기업 물품.용역 구매액의 각5% 이상 중소기업 공사구매 총액의 3% 이상	중 소 기 업 물 품 구 매 액 의 1% 이상	총 구 매 액 (공사제외)의 2%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1.1%)	총 구 매 액 (공사 제외)의 1%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0.8%)	법정 비율 없음	법정 비율 없음	법정 비율 없음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1월말까지 중기부장관에게 통보, 중기부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1월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복지부 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2월말까지 노동부 장 관에 게 제출	2월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	2월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노동부 장관이 4월말까지 공고	구매계획 회계 연도 시작 2개월 실적은 3개월 이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환경부 장관은 구매실적 공표
계약 방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행안부장관기재부장관이 고 사하는 취약계층고용비율 (30%)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1억원 가능		별도 규정 없음 (일반계약법)
공공 기관 범 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은행,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부터 6조까지의 공공기관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신설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경쟁입찰에 배치되며, 일반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함에 따라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현재도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품질경쟁력을 갖춘 일반기업의 경쟁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부문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구매 촉진 의무 규정은 수용 가능하나, 일률적인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설정은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공공기관 부담 가중 우려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¹⁷⁾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만 도입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 제19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및 2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소상공인 등 일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설정하는 등 유연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17)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

한편, 조문정비 사항으로서 제19조제2항제2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안 제2조 정의 규정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조직이므로, 이를 통일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마. 제5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등

1) 세제지원 및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제정안은 ①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사회적경제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31조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창출된 이윤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의 사회적 가치에 재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의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 보다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추구의 활성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와 같은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입법 체계에 있어서는 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세제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함.

아울러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개별법에 세제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하며¹⁸⁾,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도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의 특례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① 국유재산의 특례사용 근거 마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과 국유재산의 특례 허용요건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조세제한특례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아울러 ② 공유재산의 특례사용은 현재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창출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함.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유재산 특례의 경우 2011년 4월 1일부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 외에 별도의 법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없는 바, 제정안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이 필요하며, 특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요건¹⁹⁾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신설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이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²⁰⁾와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²¹⁾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까지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 공유재산 엄밀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미 공유재산법령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기업을 지원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과 지역주민이 사용함에 있어 동등한 이용기회 제공에 어려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정책 목적 활용 등에 제한 발생 등을 고려해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표]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사항와 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제정안
특례허용 대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
특례내용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경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허용 요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1

사회연대경제기업 일반현황

1. 사회적기업 현황

- ① (인증현황) '24년 12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3,762개소
- ② (고용현황) '24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인원은 74,135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47,655명으로 약 64.3% 수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인증 기업 수	2,777	3,215	3,534	3,737	3,762
	총 근로자 수	55,407	62,312	67,633	71,950	74,135
	취약계층 근로자 수	33,206	38,023	42,747	46,385	47,655

구분	총 고용인원								
	취약계층 유형별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청년 경단녀	결혼 이민자	장기 실직자	기타
'20년	55,407	33,206	20,709	7,641	2,886	718	523	177	552
	(100)	(59.9)	(37.4)	(13.8)	(5.2)	(1.3)	(0.9)	(0.3)	(1.0)
'21년	62,312	38,023	24,512	8,627	2,691	714	578	213	688
	(100)	(61.0)	(39.3)	(13.8)	(4.3)	(1.1)	(0.9)	(0.4)	(1.1)
'22년	67,633	42,747	28,766	9,139	2,762	686	640	224	530
	(100)	(63.2)	(42.5)	(13.5)	(4.1)	(1.0)	(0.9)	(0.3)	(0.8)
'23년	71,950	46,385	31,992	9,750	2,650	635	639	210	509
	(100)	(64.5)	(44.5)	(13.6)	(3.7)	(0.9)	(0.9)	(0.3)	(0.6)
'24년	74,135	47,655	32,980	9,969	2,690	649	641	222	504
	(100)	(64.3)	(44.5)	(13.4)	(3.6)	(0.9)	(0.9)	(0.3)	(0.7)

2. 협동조합 현황

① 협동조합 설립인가(수리) 현황(총괄)

○ (누적) '24년 12월 기준, 총 26,293개 협동조합 설립인가(수리)

* 설립 신고·인가 누계 기준, 해산·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변동 있음

(단위: 개,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일반)협동조합	1,818	1,800	1,356	1,281	1,091
사회적협동조합	825	901	657	743	834
(일반)협동조합연합회	7	8	3	4	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0	6	1	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3	5	2	2
연도 별 설립현황	2,652	2,712	2,027	2,031	1,938
누 계	17,585	20,297	22,324	24,355	26,293

② (일반)협동조합 유형별 설립수리 현황

(단위: 개,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자	1,312	1,313	991	984	875
다중이해관계자	417	395	281	224	154
직원	44	48	48	30	29
소비자	45	44	36	43	33
총 계	1,818	1,800	1,356	1,281	1,091
누 계	15,136	16,936	18,292	19,573	20,664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별 설립인가 현황

(단위: 개,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역사업형	507	566	381	466	48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161	188	143	145	241
취약계층고용형	99	102	97	81	82
위탁사업형	47	33	19	34	18
혼합형	6	2	3	4	7
기타공익증진형	5	10	14	13	3
총 계	825	901	657	743	834
누 계	2,354	3,255	3,912	4,655	5,489

3. 자활기업 현황

① 개요

- **(목적)**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자립·일자리 창출
- **(인정요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참여하는 조합 등

② 일반현황

- **(기업현황)** 총 962개소('24) / 집수리(21.5%)·청소(20.6%)·배송(15.2%) 등
※ 5인 미만 기업: 351개소(36.5%), 2년 유지율 ('22년) 87.3%→('24년) 88.1%

<자활기업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자활기업 수	1,062	997	1,012	945	962*
전국자활기업	3	3	4	4	4
광역자활기업	37	39	41	43	45
지역자활기업	1,022	955	967	898	913
종사자 총계	7,796	8,153	7,724	8,089	8,891

* 전국 자활기업 4개소(희망나르미 등), 광역기업 45개, 지역기업 개소 913개

<업종별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청소	263(24.8)	245(24.6)	217(21.4)	198(21.0)	198(20.6)
집수리	209(19.7)	206(20.7)	209(20.7)	206(21.8)	207(21.5)
배송	146(13.7)	147(14.7)	151(14.9)	145(15.3)	146(15.2)
음식점	127(12.0)	115(11.5)	118(11.7)	110(11.6)	111(11.5)
유통판매	61(5.7)	62(6.2)	71(7.0)	82(8.7)	99(10.3)
제조업	113(10.6)	97(9.7)	105(10.4)	91(9.6)	87(9.0)
기타	143(13.5)	125(12.6)	141(13.9)	113(12)	114(11.9)

* 기타 업종(사회서비스(간병·돌봄), 폐자원 재활용, 세탁 등)

4. 마을기업 현황

① 기본 현황(2024. 12. 기준)

○ (연도별) 신규 지정 점진적 감소 추세('24년도 0개 신규 지정)

(단위 : 개소, %)

구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정	448	138	109	113	88	0
지정취소	278	42	64	40	58	74
운영중	1,726	1,652	1,697	1,770	1,800	1,726

○ (지역별) 道지역(1,217개, 70.5%)이, 市지역(509개, 29.5%)보다 24배 운영 중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34개소(19.4%), 비수도권 1,392(80.6%)

(단위 : 개소,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정	2,386	182	128	149	102	98	93	80	43	298	152	116	167	152	229	189	153	55
운영중	1,726	84	61	97	57	66	63	48	33	193	139	92	155	117	209	148	121	43
지정취소	660	98	67	52	45	32	30	32	10	105	13	24	12	35	20	41	32	12
운영률	72.3	46.2	47.7	65.1	55.9	67.3	67.7	60.0	76.7	64.8	91.4	79.3	92.8	77.0	91.3	78.3	79.1	78.2

- 인구감소지역에서 총 686개소(39.7%) 마을기업이 운영 중

(단위 : 개소,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구감소	686	-	18	16	12	-	-	-	-	11	86	57	100	81	124	97	84	-
운영중	1,726	84	61	97	57	66	63	48	33	193	139	92	155	117	209	148	121	43
비율(%)	39.7	-	29.5	16.5	21.1	-	-	-	-	5.7	61.9	62.0	64.5	69.2	59.3	65.5	69.4	-

○ (고용) 총 14,134명 고용(상용 3,164명, 임시 1,612명, 일용 9,385명)

- 정규직인 상용근로자 3,164명으로 전년(3,189명) 대비 25명(0.8%) 감소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용 근로자	3,219	2,888	3,171	3,189	3,164

※ (상용) 고용계약 1년 이상 / (임시) 1개월 이상 1년미만 / (일용) 1개월 미만